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590,234,103	17,707,023
일반회계		578,765,276	17,362,958
특별회계		11,468,827	344,065
	기타특별회계	11,468,827	344,065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165,165	34,955
	주차장 특별회계	8,844,335	265,330
	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	440,195	13,206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49,827	7,495
	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769,305	23,079

- 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" 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9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709,461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잇다.
- 제 6 조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금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